

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529호
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, 교통사고환자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시범재활치료 항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입원료 명칭 변경(안 제6조, 별표2, 별표3)
  -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‘기본 입원료’에서 ‘6인실 이상 입원료’로 변경함에 따라 입원료 명칭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정
-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(안 별표4)
  -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, 로봇 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자동차운영보험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 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
- 전자우편 : melee423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587(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)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-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(전화 044-201-4861, 팩스 044-201-558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